

제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결과(의사록)

1.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18. 9. 12.(수), 10:30 ~ 16:46 / 원안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위원 : 위원장, 사무처장, 김혜정, 한은미, 김호철 위원
- 간사 : 기획조정관
- 배석 :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 KINS 원장 등

□ 상정 안건 (6건)

○ 심의·의결 안건

-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 (제3호)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 검사 변경 승인(안)

○ 보고 안건

- (제1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 (2차)
- (제2호)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 (제3호)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4차)

□ 기타 보고 (2건)

-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 구조물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

□ 회의 결과

구 분		안 건 명	심의 결과
심의 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원안의결
	제3호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변경 승인(안)	원안의결
보고	제1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결과(2차)	
	제2호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제3호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4차)	

2. 회의 내용

① 성원 보고

○ 재적위원 총 5명중 4명 참석 (상임위원 2, 비상임위원 2)

※ 11:30경 김호철 위원 참석으로 총 5명 참석

② 개회 선언

③ 안전 심의

※ 보고 1호, 2호 안전 보고 후 심의·의결 1호 안전 순으로 보고

**【보고 제 1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 (2차)**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선발생장치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대상으로 사용허가신청('15.11)에 대해 심사 수행 ('15.11~'17.12) 결과 보고
- 원안위 보고 1차시(제81회) 주요질의 답변 및 원자력안전전문 위원회 확인사항 등

【보고 제2호】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 기술환경 변화, 원자력안전법령 및 다른 고시와의 통일성 등을 종합 검토를 통해 3건의 고시 개정 추진 보고
-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추진
 - (시행령)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
 - 일시적 부재시 직무 대행을 위한 대리자 지정(제82조의2 제4항 신설), 대리자 자격요건 · 대행기간 적용 사항(제82조의4 신설), 허가사용자의 대리자 지정을 허가기준에 반영(제83조 제4항 신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제178조 별표 12의 42)
 - (시행규칙)대리자 지정시 작성해야할 지정 서식(제68조의4 신설),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의 대리자 세부 자격요건(제68조의5 별표 1의 3 신설)

◎ 심의결과 : 수정 의결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주요내용**

- (신한울1,2호기 건설허가 2건) 단위 환산값 오기 수정과 기기계통 및 기기 등의 설계문서 내용 반영,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건) 보조급수계통 경보 추가 등과 보조건물 일반배치도 개정, (한빛

1·2호기 운영허가 1건) 증기발생기 하단 수실 배수배관 관막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건설·운영허가 2건) 품질보증조직 변경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심의의결 제3호】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변경 승인(안)**

□ 주요내용

- 한수원의 핵연료 전량 인출 착수에 따라 원자로임계 등과 관련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상 예외규정*을 적용, 영구정지 운영
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방안 별도 마련
- 중수로 정기검사 항목(99개) 중 성능분야 39개 및 운영기술능력분야
5개 등 44개 항목으로 조정(핵연료 인출 후 운영되지 않는 항목 등 55개 제외)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보고 제3호】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 (4차)**

□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권한의 위탁)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에서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신청서류(‘14.12)에 대해

약 35개월('14.12~'17.11)동안 안전심사 수행

- 핵연료가공사업 수행 기술능력, 원전연료가공시설의 위치·구조 등 기술기준, 운영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위해 방지 법령기준 및 예비해체계획서의 위원회 규칙기준 등 적합 확인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총 4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수행한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행위허가에 따른 부지조성에 대한 3차 보고서 위원 요청사항 보완 설명
- ※ (1차 보고) '18.1.25. 제77회 원안위, (2차 보고) '18.7.26. 제85회 원안위, (3차 보고) '18.8.9. 제86회 원안위

4 기타 보고

□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 신고리 3호기 정주기시험(제어봉집합체 운전가능시험) 중 제어봉 간 편차로 인해 원자로보호신호*가 발생하여 원자로 자동정지('18.8.21, 10:53)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 구조물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

- 한빛 4호기 격납건물 CLP 배면 콘크리트 공극 발견('17.6월) 및 한빛 5호기 핵연료건물 외벽 콘크리트 공극 언론보도('17.9월) 이후, 전 가동원전 (25기) 대상 구조물 특별점검 추진('17.9월)에 따른 진행 상황 보고

3. 폐 회 (16:46)